

의안번호	2200544
의 퇴 인	박정 의원
회 답 일	2024.6.17.
추 계 번호	24B08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2 (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 강장해 예방조 치 등)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 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52조의2 (산업재해 발생 신고 등)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들에게 보고하여 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목격한 근로자는 산업재해 를 입은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먼 저 신고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 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벨(비상 상황 발 생 시 그 작업장 주소지 관할 소방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 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 사업주는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170조(벌 칙)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하 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벨 설치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의2. 제41조의2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52조의2(산업재해 발생 신고 등)	
3	안 제170조(벌칙)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상세 사유

- (안 제41조의2)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해당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사업주가 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의 규모와 지원단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업대상자 수) 사업대상자는 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한 사업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지원단가) 지원단가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에 소요된 비용에 따라 결정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안 제41조의2제4항)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 (안 제52조의2)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은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규모와 비상벨을 설치해야만 하는 사업주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들 사업장의 비상벨 설치 대수 및 지원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